目 次

在北人士外 越南人士 滯留調查要請

第十三「吹雪」文操

在韓太僑胞

在中共抑留我同胞釋還

在韓 中共陰大

X의불량

拉北人士 对 越南人士 調查要領

1) 6.25 動乱後 以北에 拉致된 離散家族에 対한 行方調査에 関한 件은 1954年 이름 제네바 会議에 我国代表団이 参席하였을때 当時의 外務部長官 卞榮泰 氏와 赤十字 国際委員会 사이에 처음으로 論議되었던 것입니다.

2) 이에 関聯하여 本社에서는 翌 1955年 9月 8日 第18次 赤十字国際会議 決議事項 「離散家族의 再会」의 精神下에 会式으로 拉北人士 17500名과

捕虜 2,200名의 行方調査와

歸還斡旋을 赤十字 國際委員会

에 要請한바 있읍니다.

3) 이에 對하여 同委員会는 前記

제네바 会談時에 이미 言及되었음을

指摘하고 1955年 1月 31日字로 南北

韓 當局에 同委員会의 介入受諾

與否를 打診한바 있읍니다.

4) 이에 関하여 我国政府는 同年 3月

21日字로 我国内에 있어서의 同委員

会의 活動을 受諾하였으나

北韓側은 受諾與否에 対한 그의

態度를 明白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同委員会의 1955年 11月 3日字 通報
을 받은바 있읍니다.

5) 赤十字国際委員会 代表 2名의
來韓時 本社와 同代表들과의 会談
에서 이 問題가 再論議 되었던 바
우리 側은 이 会談에서 다음과 如한
3段階의 提案을 하고 이에 대한
하여 北韓側에 交涉을 要請
하였읍니다.

① 安否 및 行方調査
② 生存者通報, 生存者과 家族間의 通信
③ 原住地 歸還 斡旋

6) 그러나 北韓赤十字社는 翌 1957年
2月 26日에 同委員会를 通하여 本社와

便利하다고 認定하는 場所에서
南北赤十字団体 代表들이 定期的
으로 向安便紙를 直接交換하였음을
提議하여 왔읍니다.

7) 이에 대하여 우리 側은 同年 3月 13日
字로 前記 委員会代表 3차의 來轍時
이미 提案한 바와 如히 向安便紙
交換前에 拉致人士의 安否와 行方
調査가 先決問題임을 指摘하고,
問題를 階段的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方針과, 爲先 이미 同委員会를 通하여
北韓側에 送付한 바 있는 拉北人士
7,034名의 安否와 行方調査를

促求하였읍니다.

2) 그러나 北韓赤十字社는 同年 6月 14日
字로 이의 連絡文擧를 赤十字国際
委員会를 通하여 다시 提議해 왔
읍니다.

3) 以上과 如히 南北韓双方의 相異
한 主張은 行方消息交換에 何等
成果를 거두지 못한데다 事態의
緊急性에 鑑하여 同年 7月 20日
赤十字国際委員会는 南北韓 赤十字社
에 同行方消息交換을 実践에 옮기
도록 助力한것을 同時에 提議하였
읍니다.

特히 双方 赤十字社에 対하여
該當者의 生存與否의 居処를
尋人者에 알림으로서 그들 家族間
에 家族的 性格을 띤 消息을
交換함에 積極協力 하도록 要請
하였 바입니다.

40) 그후 同年 11月 28日字 本社 代表가
印度国 뉴-델리에서 開催된 第
19次 赤十字 国際会議에 参席
하였을 때, 저희들은 北韓側으로 부터
同総会 代表를 通하여 우리 側에
前記 2,034名中 337名에 対한
生存確認과 伝達이 있었으며, 本社에

서는 이를 紙上에 發表하여
그 家族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11) 이와 같이 하여 北越側에서는
同年 12月 3日字로 우리 側에 同委員會를
通하여 越南人士의 行方調査를
要請하여 그 數는 總 14,132名
에 達하였다. (1957年 12月 7日 - 1958年
4月 22日까지 接受)

12) 이에 對하여 1958年 7月 11日
同委員會는 다시 回答을 促求하여
왔으나 우리 側은 前記 14,112名은
拉致된 것이 아니고 自由意思에
依하여 越南한 자이고 또 이에

應하면 北韓의 緣故者가 追跡
遣送 慢應가 있으리라 保留하여
왔던 것입니다. (1959年 3月 前本社
職員 李起錫의 中央委員候補 極東
部長에 對한 個人的見解)

13) 그런데 그후 1960年 12月 13日과 1961年
10月 16日 同委員会는 이 越南人士의
問題에 對하여 우리側의 立場이
아직 確立되지 않은 이問題를
다시 取扱한 可能性을 考慮한바
있는지 또다시 問議하여 왔읍니다.

在樺太僑胞

1) 第2次 大戰中 日本政府에 依하여
南樺太地方에 強制로 徵用 당하여
終戰과 同時에 取殘된 僑胞中 一部는
6.25 動亂後 北韓에 送還되고 또 一部는
日人과 結婚하여 日本에 移住하고 나머지
約 4千名 (1958年 當時)이 殘留하여 있는
實情임.

2) 위와 같은 4萬名의 歸還問題에
관하여는 「在日 第2次 大戰時 韓國人
犧牲者 聯合會」가 1958年 이들을 代身하여
日本 赤十字社를 通하여 赤十字 國際委員會
에 歸還 斡旋을 要請하여 놓고 있음.

32 에의 회의에 赤十字 國際委員会
에서의 의뢰 調査 또는 肉親消息伝達
에관하여 歸還 輕送에 関하여 協力을
意向을 表明하여 있음에 特히 在韓
家族의 関心的으로 歸還申請을 하여
그 推進에 이바지 有利한 措置가
있을것.

4) 그後 1960年 本社에서 「在日第二次
大戰時 韓國人 犧牲者 聯合会」를 통하여
在韓犧牲者 関係 名簿를 提出
하였으며 在韓家族의 申請書 등이
아직 入手되지 않아 名簿의 作成이
되지 않았음.

5) 라디오 이외의 전파 매체에 관한 권리는
이것을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해 보류한다.
이의 부 同年 八月 高等 國際委員會 代表
交換時 이 問題에 對한 回議는 第3條
上記 名單은 根據로 約 1,000名의
在韓 家族의 申請을 希望한다 (公表한다)
6) 1,423에 上記 高等 國際委員會 代表
는 歸還 後 1,000名의 歸還申請
書를 받는 것이 必要하다.
7) 이에 關하여 本社는 政府로부터
連席會議에서 (1960. 11. 4) 討議한
結果 議事에 登錄된 照會書 3部와
보내 주었다. 보내주기 바라며 上記 委員會